

최신 판례 예규

Marketing Tax consulting

용역수행에 부수되는 소프트웨어 비용을 일시수령·수익으로 받은 경우도 용역제공기간 동안에 안분하여 익금반영함

약정에 따라 용역제공 기간 동안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구매비용을 용역의뢰 업체로부터 일시에 수령하는 경우 익금 인식방법은 소프트웨어가 사용되는 용역제공 기간 동안 안분하여 인식하는 것임

서면법인-2000, 2020.05.26

■ 질 의

- 질의내용
- 약정에 따라 용역수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SW) 구매대금을 일시에 수령한 경우 익금 인식방법
(갑설) 용역제공 기간 동안 안분 계산
(을설) 대금 수령일에 일시에 수익 인식

■ 회 신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과 일정기간 동안 설계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하고, 약정내용에 따라 용역수행과 관련된 설계용 소프트웨어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시에 수령(용역계약이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반환의무 있음)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설계용역을 제공하기로 한 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대부업자가 영위하는 채권매입추심업에서 발생하는 매입채권추심이익은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과세표준 산정 시 채권회수손익은 통산하지 않음

서면법인-76, 2020.08.21

■ 질 의

- 질의법인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부업자로서 -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채권의 관리(추심 또는 매각 등)를 업으로 하는 채권매입추심업을 영위함
- 질 의
- (질의1) 대부업자가 영위하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에서 발생하는 매입채권추심이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질의2) 질의1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경우 과세표준 산정 방법

회 신

아래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8-법령해석과-0976, 2020.8.11.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채권 매입원금을 초과하여 회수되는 금액에 대하여 양수채권회수이익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양수채권회수이익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과세표준 산정 시 양수채권회수손익은 통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 중도해지로 원상회복비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 이를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사전법령소득-240, 2020.05.25

질 의

- 신청인은 서울 강남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임
 - 신청인은 임차인 A와 건물을 2014.11.1부터 2021.10.31까지 임대하기로 계약하면서 임대기간 종료시에 임대차 목적물을 준공도면대로 원상복구하여 인도하도록 약정*하였음
 - * 상호합의를 거쳐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임차인은 쌍방이 외부 시공업체의 견적을 받아 합의하여 결정한 원상복구비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부가세 별도로 20억원 이내 지급함)
 - 임차인 A는 영업부진으로 2017.3.31. 사업장을 철수하고 임대료만 지불하고 있던 상황에서 새로운 임차인 B를 추천하여 임차인 B가 임차권을 승계하여 신청인과 임대계약을 체결(2019.4.5.)하되
 - 임차인 B는 기존 사업장을 그대로 사용하고 계약 종료 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임차인 A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면서 원상회복비 20억원을 지급하기로 함

질의

- 임대건물을 반환받으면서 원상회복비를 금전으로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원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여부 및 산입하는 경우 해당 소득의 수입시기

회 신

귀 사전답변의 경우,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이전

에 계약이 해지되어 임차인이 건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할 의무에 따라 원상회복비를 지급하는 경우 임대인은 그 지급받은 금액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지정기부금 단체인 비영리내국법인이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 받은 경우 기부 받은 자산의 품명·수량·단가·금액 등을 기재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서면법인-778, 2020.05.26

질 의

- 질의법인은 매월 지역의 민간단체로부터 정기적으로 물품을 후원 받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해당 민간단체는 2019년까지 기부 물품의 명세서(상품명·단가·수량·금액 기재)를 제출하였으나, 2020년부터 총 금액만을 기재하여 제출하고 있음

질의내용

- 지정기부금단체가 현물기부를 받은 경우 해당 기부물품의 내용(품명·수량·단가·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지정기부금 단체인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 받은 경우 기부 받은 자산의 품명·수량·단가·금액 등을 기재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